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1. 4 .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0월24일 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6년 10월 3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4차 행정위원회(2006.11. 3)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가. 개정이유

-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구 벤처기업인의 열망인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가 신축 완공되면 입주대상과 시설지원 및 운영지원 등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벤처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및 모집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및 행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임대료, 공공요금 등 입주자 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창업보육센터의 공동운영 및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창업보육센터 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창업보육센터 운영 수탁자가 협약 등을 위반하였을 시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35조, 「중소기업법」 제5조

3. 專 門 委 員 的 檢 討 報 告 要 旨 (專門委員 김완섭)

- 본 조례는 우리구 문래동 3가 54번지 66호 외 1에 건립하고 있는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과 장소확보 곤란, 경영능력 미흡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으며,

- 조례의 주요내용은 입주대상 벤처기업의 선정, 입주자의 부담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공동운영, 운영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공동운영 또는 위탁운영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과 운영 경험의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제정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신청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시행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를 “구청장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신청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 벤처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로 하여 의미 전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의 명확을 기하였으며, 부칙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를 신설하여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요지

- 1) 제4조 제1항을 수정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는 유망벤처기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 2) 제6조의 위원을 구의원 2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과 벤처기업에 관여하고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 3) 부칙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지원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를 신설하여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수정 주요골자

- 1) 안 제4조제1항“창업보육센터의 입주신청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시행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를 “구청장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신청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 벤처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지원기관 등”을 “지원기관”으로 하며
- 2) 제6조 제3항 중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및 벤처전문가 등”을 “위원은 구의원 2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과”로 하며

- 3) 제8조 제1항의 “서울소재 대학”을 “서울소재 대학교”로 하며
- 4) 부칙의 “이 조례는”을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으로 하며, 부칙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로 수정한다.

5. 審査結果：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신청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시행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를 “구청장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신청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 벤처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지원기관 등”을 “지원기관”으로 하며

(안) 제6조 제3항 중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및 벤처전문가 등”을 “위원은 구의원 2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과”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의 “서울소재 대학”을 “서울소재 대학교”로 하며

(안) 부칙의 “이 조례는”을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으로 하며, 부칙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로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호
----------	-----------

제안년월일 : 2006. 11. 3.

제안자 : 윤준용 위원

1. 수정 이유

- 제4조 제1항을 수정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는 유망벤처기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 제6조의 위원을 구의원 2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과 벤처기업에 관여하고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 부칙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지원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를 신설하여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안) 제4조 제1항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신청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시행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를 “구청장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신청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 벤처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지원기관 등”을 “지원기관”으로 하며

(안) 제6조 제3항 중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및 벤처전문가 등”을 “위원은 구의원 2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과”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의 “서울소재 대학”을 “서울소재 대학교”로 하며

(안) 부칙의 “이 조례는”을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으로 하며, 부칙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입주대상 등) ①창업보육센터의 입주신청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시행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p> <p>② ----- -----지원기관 등-----.</p> <p>③ (생략)</p>	<p>제4조(입주대상 등) ①구청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 신청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 벤처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p> <p>② ----- -----지원기관-----.</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 대학 교수 및 벤처전문가 등----- -----.</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생략)</p>	<p>제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위원은 구의원 2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과-----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동운영) ① ----- -----서울 소재 대학----- -----.</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8조(공동운영) ① ----- -----서울 소재 대학교-----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4.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년월일 : 2006. 10. 2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구 벤처기업인의 열망인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가 신속 완공되면 입주대상과 시설지원 및 운영지원 등 벤처기업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자 자격 요건 및 모집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자금 지원 및 행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창업보육센터 운영관련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임대료, 공공요금 등 입주자 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창업보육센터의 공동 운영 및 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바. 창업보육센터 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사. 창업보육센터 운영 수탁자가 협약 등을 위반하였을 시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135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

다. 합의사항 :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2006. 8.23 ~ 9.11)결과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등포벤처밸리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적용범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 관리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0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주대상 등) ①창업보육센터의 입주신청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시행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②구청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업무 총괄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일반 신문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지원 등) ①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창업보육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벤처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및 벤처전문가 등 벤처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5. 기타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의 부담금) ①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동장비 사용료,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운영) ①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과 공동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타 창업보육센터의 공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협약에 의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 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공동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기타 창업보육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창업보육센터를 공동 운영 또는 위탁한 경우에도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감독 및 필요한 경우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창업보육센터의 공동 운영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와 제11조의 지도·감독 관련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동 운영 및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